

# 재산형성에 대한 주부의 기여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Wife's Contribution to Matrimonial Property—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文淑才

성심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鄭榮錦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ans University

Prof.: Moon - Sook Jae

Dept. of Home Management, Songsim University

Assistant Prof.: Jeong - Young Keum

## 〈 목 차 〉

I. 문제의 제기

II.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와 현황

III. 재산형성에 대한 주부노동의 기여

I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The reformed family law was enforced from Jan.1,1991 and the claim to division of matrimonial property in case of divorce, a newly enacted right in the law, is expected to increase the economic position of married women. By this system, married woman can claim her share in the matrimonial property in case of divorce if she verifies her contribution to it.

But actually, household work of housewives has not been evaluated properly as compared with their husbands' work in deciding of property division rate, because there is no economic base about the value of household work. So, this study verified wives' role of contribution to matrimonial property and compared their work hours with their husbands.

As the result, following suggestions can be presented.

1. the contribution rates of husband and wife to the matrimonial property have to be acknowledged equally and, in case of employed wife, her rate has to be evaluated higher than her husband.

2. Because the property division is not a solatium but a transfer of wife's share,

responsibility which marriage has dissolved should not be taken more to women than men.

3. Decision of division rate has to be made regardless the amount of property unless there are special reasons.

4. The donation tax and inheritance tax should not be imposed on matrimonial property which was returned to wife from her husband.

## I. 문제의 제기

부계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근간으로 하던 과거의 가족형태와 달리 현대의 가정은 남성과 여성이 1:1로 대등하게 결합하여 새로운 가정을 형성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제까지 이어져 온 남성중심적 사상이 아닌 양성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가족법 개정이 이루어져 1991년 1.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민주적 가족제도형성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로 인하여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받아 온 친족법, 상속법, 혼인법 등에서 많은 규정이 개정되고 새로운 제도가 신설되는 광범위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새로 개정된 가족법은 현대사회에서의 부부 공동생활을 남편의 노동에 의한 자원획득과 아내의 노동에 의한 가사처리로 영위되는 분업적 가정생활로 이해하는(한국민사법학회, 1982:109-110) 재산분할청구권과 같은 제도를 신설하여 성차별의 원칙에서 성중립의 원칙으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이혼의 신분적 문제와 재산적 문제를 해결하는 이혼금부의 체계를 완비하였다고 할 수 있다(황우여, 1992:11). 이것은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주부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주부의 기여를 인정하는 법률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재산분할청구권이 실효를 거두기에는 미비점이 발견된다. 실제로 재산분할을 하려고 할 때,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 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민법 제839조의 2, ②)고 규정함으로써 액수와 방법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

어 있지 않다.

또한 이 제도는 사회의 모든 양성평등원칙을 가정에도 적용시킴으로써 문화지체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나, 실질적인 근거의 불충분으로 인해 가사노동과 취업노동간의 차별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즉,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가정에만 전통을 고수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부작용을 일으켜 주부들이 가사노동을 기피하려고 하므로 가정의 불안정성과 사회문제가 연쇄적으로 야기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가정이 안정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하고, 이는 다시 가사노동과 취업노동간의 동등한 가치부여를 통해 가능하다. 그러나 가정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취업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동일한 조건에서의 선택을 불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실무입장에서 지적되어 왔고(김삼화, 1991: 이화숙, 1990: 시사저널, 1991. 5) 판례상으로도 취업주부의 기여도는 50%가 인정되는 데 비해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그 이하로 결정되므로 여전히 취업노동을 우위에 두는 실정이다(황우여, 1992, 25; 법률신문, 1991. 12. 2). 그런데 취업주부들이 전업주부들보다 비교적 노동시간이 길므로 기여도가 높은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한 가정내에서 취업노동에 종사하는 남편이 취업노동이나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아내보다 가정유지 및 재산형성에 더 많이 기여했다고 보는것은 분업적인 가정생활이라는 현대적 개념에 위배된다. 따라서 한 가정의 재산형성에 대한 주부의 기여도에 관한 새로운 판단과 시각이 요구된다.

이제는 재산분할에 관한 첫 판결이 내려진 후 약 1년이 지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

나고 있으며 하급심에서 내려진 판결만도 20여건이 넘었으므로(조선일보, 1992. 6. 24), 이 시점에서 재산분할의 처리상황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일이 의미있으리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취업주부의 가사노동 및 임금노동이 남편의 임금노동 못지 않게 가정의 재산형성에 기여함을 증명함으로써 재산분할액 결정시에 주부의 기여도를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본론에서는 먼저 재산분할청구권이 신설된 의의와 성격을 밝히고, 이를 근거로 내린 판결에서 실제로 재산분할이 어떻게 결정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처리현황을 제시하며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제시한다. 또한 판결에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부노동의 가치를 증명해야 할 것이므로 가정의 재산형성을 위한 주부의 역할을 노동가치와 시간의 측면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 II.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와 처리현황

### 1.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새로 개정된 민법 제 839조의 2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여,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 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제도의 입법취지는

①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생활공동체가 해체되어 재산관계를 청산하게 되는데,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혼인생활에 협력하여 온 타방의 기여도(특히 처의 가사노동)가 잘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공동생활의 실체에 부합하는 청산이 필요하고,

② 이혼후에 생활능력이 있는 쪽이 생활능력이 약한 쪽을 부양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하고 도덕관에도 합치되며,

③ 경제적 약자인 처가 이혼후의 생활곤란을 염려하여 경제적 강자인 남편의 부당한 대우를 그대로 인정하게 됨으로써 혼인생활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원칙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④ 위자료 외에 재산분할을 인정함으로써 이혼원인에 있어서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변천해가는 이혼법의 추세에도 부응하게 되었다.(김영갑, 1991, 52)

재산분할청구권은 법적으로 청산권 요소와 부양적 요소라는 2가지 성격을 갖는다. 청산적 요소란 부부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 유지된 재산이 어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 해소시에는 실질적 공동 재산을 쌍방의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부양적 요소란 이혼으로 상실하게 된 기대에 대한 보충으로서, 혼인해소시에도 생활이 곤란한 일방에게 다른 일방은 자기재산상태가 허용하는 한 원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황우여, 1992: 김영갑, 1991) 이 때 청산적 성격을 강조하면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근거로 한 재산의 반환요청이 되며, 부양적 성격을 포함하는 것은 혼인으로 인한 여성의 사회활동능력 상실이나 자녀의 양육비용을 감안하는 것이 된다.(이희숙, 1992, 174)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부부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이혼시에 일방의 소유가 되므로, 실질적으로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명의권자-대체로 남편-가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다. 이러한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민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신설하여 가정의 재산에 대한 아내의 기여를 인정하게 되었다.

부부의 재산은 3가지로 인정되어, 제1종재산은 재산취득에 관해 배우자의 협력이 없었던 것으로서 부부가 혼인전부터 각각 소유하고 있던 재산과 상속이나 증여에 의한 재산으로서 특유재산을 의미한다. 제

2종재산은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등과 같은 고유재산이다. 또 제3종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부동산, 예금, 주식 등으로서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이다. 이 중에서 3종재산은 종래에 명의권자의 소유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문제시되어 왔으나, 개정민법에서는 실질적으로 부부공유재산으로 보아 청산의 중심이 되는 실질적 고유재산이 되었다.(김영갑, 1991, 59; 황우여, 1992, 20; 이화숙, 1990, 150)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남성중심적 사상이 지배적이어서 가정의 재산은 남편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며, 아내의 명의로 된 재산은 취득세 부과와 원인이 되므로 대부분의 재산을 남편의 명의로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때문에 이제까지는 이혼으로 인한 생활능력의 상실이 여성에 대한 구속으로 작용되어왔으나, 이제 3종재산이 실질적 공유재산화되어 부부간에 재산이 분할된다는 것은 가정의 재산에 대한 아내의 기여를 명실공히 인정하는 것이며 아내의 지위를 경제적, 법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가정의 재산정도나 협력정도는 다종다양하므로 이 제도의 처리과정상의 문제로 인해 본질적 의미가 퇴색될 여지가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즉 재산을 정확히 파악 할 수 없다던가 주부의 협력정도를 낮게 측정하는 경우, 가사노동에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재산형성에 대한 주부의 기여도가 과소평가 될 수밖에 없다. 일본이 그 예로서 일찌기 재산분여제도를 규정하였으나 전업가정주부의 기여도를 낮게 평가한 결과 20-30%에 달하는 소액을 분배하였다(이화숙, 1990, 176, 재인용). 따라서 지금까지 처리된 판례를 통해 실제로 가사노동의 기여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 2. 판례상의 처리현황

재산분할시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청산의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이때 가정법원은 이혼부부의 재산상태, 청구자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가사

노동의 댓가, 혼인기간의 장단, 당사자의 취업, 연령, 건강상태, 재혼과 취직의 가능성, 혼인생활비용의 부담실태 등을 고려한다. 또 판례에 따라서는 이혼에 이른 경위등을 고려하여 분할액을 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무상 인정되고 있는 기여도는 주부의 유형에 따라 대체로 3가지로 귀결된다. 우선 부부가 함께 직장에 다닌 맞벌이주부형의 경우에는 아내의 수입 및 가사, 육아에 대한 공헌을 고려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사노동에만 종사한 전업주부형의 경우에는 지분비율이 일정치 않은데, 아내의 결혼지참금이나 친정원조, 생활비절약에 의한 저축 등을 고려하여 50% 인정한 예도 있고 남편의 특별한 능력에 의한 재산형성이나 병약한 주부라는 점을 고려하여 1/3-20%인정한 예도 있다.(황우여, 1992; 김영갑, 1991)

이와 같은 기여도 결정은 판례를 통해 더 명확히 알 수 있으므로 <표1>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처리현황을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 몇가지 판례에 대한 판결요지를 통해 기여도 결정과정을 알아보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재산분할청구권제도가 신설된 후 첫번째 소송에 대한 선고인 90드62624(91년 5.16)에서는 아내가 결혼 중에 약국을 경영하여 월150만원 정도를 벌어들였고 남편은 결혼전에 가지고 있던 건물에 대한 임대료로 월200만원씩의 수입을 올리는 사실이 인정되어 양쪽의 수입정도와 혼인기간, 연령, 이혼 뒤 쌍방의 수입능력 등을 고려할 때 남편은 아내에게 결혼 뒤 증식한 재산의 절반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이 판결은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댓가인 위자료와는 별개로 결혼중에 형성한 재산의 몫을 분할하는 최초의 사례로서 의미가 있으나, 취업주부인 동시에 결혼기간이 짧아서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사리가 되지 않는 못하였다.

89드58308(91년 6. 7일 선고)에서는 아내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생활하면서 가사노동을 전담하여 남편의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노력했으며 보험회사 외판원과 양말행상을 하여 얻은 수입으로 생활하는 등 부동산을 취득함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사실등이 인정되고 이혼 후의 생활능력등을 고려하여 아내

〈표 1〉 재산분할 처리표

사건번호		89드58308	90드48598	90드62600 63436	90드62624	90드63238
당사자	연(남) 령(여)	44세 40세	32세 29세	31세 34세	44세 36세	43세 39세
	결혼기간	13년5개월	6년1개월	9년11개월	1년5개월	10년7개월
	직(남) 업(여)	한의원직원 주 부	공 원 가내납품업	호텔종업원 주 부	임 대 업 약 사	의 사 주 부
	자 산	1억4천만원	9백만원	1억원	3천4백만원	6억6,000여만원
	수(남) 입(여)	월35만원		월100만원	월200만원 월150만원	200만원
이혼사유	부당한대우	부당한대우	부정한대우	부당한대우	부당한 대우	
파탄책임	남 자	남 자	남 자	남 자	남 자	
기 여 도	1/2	1/2	판단생략	1/2	40내지45%	
재산분할액	지분이전	450만원	3,000만원	1700만원	2억8천만원	
위자료액	1,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3,000만원	
사건번호		90드74207	90드74375	91드1220	90드12667 91드6615	91드13452
당사자	연(남) 령(여)	36세 31세	39세 33세	39세 33세	39세 36세	35세 30세
	결혼기간	6년3개월	12년5개월	8년5개월	10년6개월	2년11개월
	직(남) 업(여)	정육점경영 주 부	술집종업원 주 부	의 사 주 부	상 업 주 부	상 업 상 업
	자 산	4천만원	1억4천만원	4억원	16억1,500 만여원	6,000만원
	수(남) 입(여)			연1억원		
이혼사유	부당한대우	부당한대우	부당한대우	부당한대우	부당한 대우	
파탄책임	남 자	남 자	남 자	남 자	남 자	
기 여 도	1/2	50내지70%	판단생략	1/3	1/2	
재산분할액	2,000만원	5,000만원	1억5천만원	5억3천만원	3,000만원	
위자료액	700만원	2,000만원	7,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	
사건번호		90드74856 91드32286	90드18697 78254	90드24912 39372	90드56544	90드77251
당사자	연(남) 령(여)	46세 46세	62세 54세	46세 40세	30세 31세	65세 57세
	결혼기간	21년7개월	1년7개월	13년2개월	6년1개월	20년 6개월
	직(남) 업(여)	회 사 원 주 부		회사원퇴직 주 부	인테리어업 공동경영	양복점등 공동경영
	자 산	임야450평	남자의특유 재 산	주택2개 시가약2억원	건물7천만원 현금5천만원	주택1억원
	수(남) 입(여)	월1백만원				
이혼사유	부당한대우	부당한대우	부당한대우	부당한대우	부당한 대우	
파탄책임	남,녀	남 자	남 자	남 자	남 자	
기 여 도	판단생략	불인정	50% 및 30%	85% 및 50%	40%	
재산분할액	부동산양도	전부기각	7천만원	8천만원	2/5지분양도	
위자료액	1억원	2,0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청구없음	

〈표 1〉 계속

사건번호	91드27949	91드5820	91드12947	91드4431	91드47844	
당 사 자	연(남)	46세	56세	49세	45세	53세
	령(여)	41세	45세	42세	38세	49세
	결혼기간	17년3개월	현행민법시행 이전에 이미 이혼을 한	10년6개월	18년10개월	22년 6개월
	직(남) 업(여)	건축하청업 주 부	경우로서 재산 재산분할청구 전부 기각	사 업 주 부	회 사 원 주 부	무 직 상 업
자 산	연립주택 84.57		부동산 5억 4천여만원	아파트 1채 채권3천만원	주택 1동 아파트분양권	
수(남) 입(여)				월150만		
이혼사유	기타사유		부당한대우	부정행위	기타사유	
파탄책임	남 자		남 자	여 자	남 자	
기 여 도	1/3		40%	판단생략	판단생략	
재산분할액	1/3지분양도		1억6천만원	5천만원	주택1/2지분	
위자료액	1,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사건번호	91드23893	91드6348	91드20511	
당 사 자	연(남)	42세	49세	51세
	령(여)	27세	45세	45세
	결혼기간	5년4개월	9년8개월	19년7개월
	직(남) 업(여)	공동으로 상업운영	회사원,행상 고용원주부	운전기사 행상,외무원
자 산	주택 4억원 예금 1천만원	부동산2억4천만원	주택2억여원	
수(남) 입(여)			50만-60만원 50만-60만원	
이혼사유	부당한 대우	부당한 대우	부당한 대우	
파탄책임	남 자	남 자	남 자	
기 여 도	1/3	10% 및 50%	30%	
재산분할액	1억1천만원	3,000만원	6,200만원	
위자료액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 자료 : 황우여(1992). "개정민법상의 이혼". 『인권과 정의』

에게 부동산에 대한 1/2지분을 이전하도록 하였다.

91드12230(91년 6. 13일 선고)에서는 남편이 결혼 중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점과 현재수입으로 보아 앞으로는 많은 재산축적이 기대되며, 아내는 현재의 남편이 있기 까지 온갖 수모를 8년 5개월동안 견디며 어려운 가정을 꾸려왔고 가사노동과 육아에만 전

념하여 내조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재산(약3억원)을 축적할 수 있었으므로 아내에게 1억 5천만원을 지급 하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액수상으로는 현재 재산 의 50%를 인정받았을지라도, 앞으로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의사나 변호사등의 자격을 취득하여 재산취득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 무형재산을 청산

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점과 남편의 수입(세무서 신고 90년도 총수입액 1억2천여만원)을 고려한다면 분할액이 과소하다고 볼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전통적 의미의 재산보다 자격증, 영업권, 퇴직금등의 인적재산이 보다 가치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형의 재산을 분배하지 않으면 형평한 분배라고 할 수 없다(이회숙, 1990, 172).

91드6515(91년 7.25일 선고)에서는 아내가 결혼기간 중 재산증식에 기여한 정도와 아내의 정신질환이 이혼사유가 된 점을 참작하여 재산분할비율을 1/3로 정하였다. 이것은 아내의 재산증식정도를 인정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유책사유가 여성에게 있을 때 분할액을 감액한 사례이다.

90드63238(91년 9.13일 선고)에서는 남편의 재산이 대부분 의사수입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아내는 결혼전에 약사자격을 취득했고 결혼초에 약국을 경영하여 상당한 수입을 올림으로써 재산축적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이 인정되며, 재산이 법적으로 남편의 단독소유로 되어 있으나 아내의 친정자금유통이 재원 마련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되어 40%의 기여도를 인정하였다. 이것은 아내의 주부로서의 역할, 결혼 초의 직업노동을 통한 수입, 친정의 기여 등을 고려한 판결이다.

91드4431(92년 1.9일 선고)에서는 아내가 8년동안 의뢰원과 가사노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책사유가 아내에게 있었으므로 30%의 기여도를 인정받고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였다. 이 판결을 보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재산분할에 있어서 가사노동수행만으로는 재산형성기여도를 1/2까지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제시된 사례를 통해 볼 때 몇가지의 문제점이 제기된다. 첫째로, 가정은 남편의 직업노동과 아내의 가사노동을 통해 유지된다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에만 종사한 주부의 기여도를 30-40%인정하는 것은 직업노동보다 가사노동을 경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로, 아내가 가사노동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직업노동이나 부업을 통해 개계수입에 도움을 주었을 경우에만 50%의 기여도가 인정된다. 셋째로, 재산분할 처리표에서 보듯

이 파탄책임이 남자에게 있는 거의 대부분의 판결에서는 남성의 유책성으로 인해 분할액을 삭감하여 여성의 기여도를 1/2이상 인정한 사례가 한 건도 없으나 파탄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경우에는 아내의 기여도를 1/3로 결정하였다. 네째로, 대부분의 판결에서는 주부고유의 수입이 있었거나 가업을 공동으로 경영했을 경우에 아내의 기여도를 1/2인정하였으나 재산이 많은 경우, 예를 들면 4억원 이상일 경우(90드63238, 91드6515, 91드12947, 91드23893등)에는 주부의 기여도를 1/3-40% 인정하였다. 이 중에는 주부에게 파탄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남편과 공동으로 상업을 운영하고 남편에게 파탄책임이 있을 때에도 기여도를 낮게 측정하였다.

따라서 가정내에서 가사노동과 취업노동을 동등하게 인정하고자 한다면, 또한 주부들이 가사노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고자 한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결혼 후 가사노동에만 전념해 온 아내의 기여도를 50%인정해 주어야 하며, 이종노동을 한 취업주부의 경우에는 취업소득으로 형성한 재산과 가사노동으로 기여한 재산을 모두 인정해 주어야 한다. 이때 가정내에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 남편의 탁월한 능력으로 번 재산, 시부모등의 가족과 함께 번 재산이 있다면 이것은 별도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재산에 대한 부부의 기여도 결정시에 남편과 아내의 유책성을 동일하게 고려하여 여성에게만 파탄책임을 부과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다른 한편으로 유책성 여부는 위자료의 관계하에서 결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남편의 보편적인 직업노동을 통해 축적된 재산은 액수에 관계없이 남편과 아내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다음에서는 아내의 노동가치를 남편의 것과 동등하게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가정의 재산형성에 기여하는 주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것은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관한 판결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 III. 재산형성에 대한 주부노동의 기여

#### 1. 주부역할의 생산적 가치

현대의 가정은 욕구충족을 목적으로 개별 구성원들이 인위적, 자연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사회적, 경제적 행위를 하는 단위라고 정의되고 있으므로 (문숙재, 1981), 가족원들은 개인의 필요에 의해 가정을 형성하고 구성원의 수를 증가시키게 된다. 즉 부계를 계승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사회의 대를 이어주기위해 가정이 형성되기보다는 가정이 형성된 후 가정 안에서 세대교체의 기능이나 불완전한 인간을 사회화된 인간으로 완성시키는 양육의 기능 등이 수행된다.

따라서 부계중심가정에 여성이 편입되기 보다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관계에서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로 말미암아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남편과 아내는 각각의 능력에 맞게 가정에 기여하게 되며 대체로 남편의 직업노동과 아내의 가사노동을 통해 가정이 유지, 발전된다.

이러한 개념은 가사노동의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즉 재화나 용역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도록 정비해주는 과정인 가사노동은 상품의 사용 가치 또는 효용가치를 부가 내지는 창출한다는 점에서 생산성이 인정된다. 또한 가사노동은 시장노동을 통해 대체가능하므로 가사노동 시간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인에게 지불될 임금만큼의 가치가 부여됨으로써 생산성이 증명될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객관적 가치학설의 관점에서 보는 것으로서, 가사노동은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생활수단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이를 사용하는 노동력 상품의 가치도 높여준다는 것이다. 남편의 노동력의 가치는 실제로 가사노동에 의해 부가된 가치를 포함하므로 생활에 필요한 생활수단 상품의 분량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 (김외숙, 이기영, 최은숙, 1992, 195-199) 따라서 남편의 직업노동을 통한 소득이 축적되어 형성된 가계재산에는 주부의 가사 노동을 통한 기여가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

한다.

이러한 논리는 상실비용의 측면에서 보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통해서도 전개될 수 있다. 즉 가정에서 주부에 의해 가사노동이 수행되지 않으면 누군가에 게 그 일을 대행시키기 위해 비용이 지출될 것이므로, 주부는 직접소득을 벌지는 않지만 가사노동을 통해 가정소득의 지출을 방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사노동을 대체하기 위한 상실비용은 곧 주부노동의 가치가 되며 가정의 재산도 상실비용을 절약한 결과이다 (Chadeau, 1985, 242). 이 개념을 이용하여 1991년에 가사노동의 가치를 산정한 연구 (문숙재, 정영금, 1991)에서 전문가 대체비용법과 종합적 대체비용법을 통해 계산한 결과, 주부의 노동을 통해 한 달에 각각 676,847원과 497,996원씩 가정소득이 절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가정의 유형별로 파악해 보면, 2인 가정의 경우에 최소 588,744원이 절약되며, 가족수가 3인 이상인 동시에 막내자녀가 1-4세인 초기 확대기 가정의 경우에는 최대 955,548원이 절약됨으로써 가정의 재산형성에 기여하였다. (전문가 대체비용기준)

한편, 가정노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업노동을 포기한다는 상실임금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된다. 즉,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유급의 직업노동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의 손실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주부가 포기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그 결과, 기회비용법에 의하면 616,683원, 요구임금방법에 의하면 707,601원, 주관적 평가방법에 의하면 540,366원이 평균적으로 매월 가정으로 유입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액수도 역시 가정의 유형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가정에 대한 경제적 기여는 가정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겠으나, 이 결과는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가 가정의 재산형성에 기반이 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법률적인 차원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의 본질상 청산적 요소를 명확히 규정하여, 부부의 실질적 공동재산을 그 재산의 형성, 유지에 기여한 쌍방의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청산적 재산분할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였다. 동시에 부부 중 어



는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일지라도 그것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면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황우여, 1992,10-17).

따라서 가정의 본질적 의미, 가사노동의 생산성, 가사노동의 상실임금적 측면, 법률적 차원 등 여러 이론과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때, 주부의 가사노동은 남편의 직업노동과 더불어 가정의 재산형성에 기여함을 주장할 수 있다.

## 2. 주부의 가사노동시간

임금노동과 가사노동을 비교해 볼 때 노동의 종류, 규칙성, 소득의 유무로 인해 엄밀한 비교는 어렵지만 노동의 질이 동일하다고 본다면 양적인 측면에서 노동시간의 비교가 가능하다. 따라서 전업주부, 취업주부, 취업한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과 임금노동시간을 <표2>에서 비교하였다.

연구시기나 연구방법에 의해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업주부의 경우에 대체로 8-11시간의 가사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비해 취업주부는 4-6시간의 가사노동과 7.7-8.7시간의 임금노동을 수행하여 이종의 노동부담을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혼여성과 기혼남성의 노동시간을 비교한 김양희(1991)의 연구를 보면, 기혼남성은 가사노동 0.5시간과 임금노동 9.5시간을 합하여 약10시간의 노동을 하는데 비해 기혼여성은 가사노동 5.6시간과 임금노동 8.7시간을 합한 14.3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다(비

상용고 기혼여성의 경우이지만 연구대상주부의 84.9%를 차지하였음). 즉, 취업한 아내는 남편보다 하루에 4시간 정도나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결과이므로 이들의 노력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이것이 재산형성에 대한 취업주부의 기여도를 50%이상으로 평가해 주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가정마다 주부의 임금노동과 가사노동 시간에 차이가 있겠지만 비상용고이며 가사노동도 담당해 온 경우에는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율이 남편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전업주부와 취업한 기혼남성의 노동시간을 비교해 보면, 문숙재-정영금(1991)과 김양희(1991)의 연구에서 각각 11.1시간과 10.0시간으로 추산되어 비슷한 정도의 노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신혼기, 확대기, 축소기등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가사노동시간이 증감하므로 결혼 지속연수가 짧은 경우에는 남편보다 아내의 노동시간이 짧아서 기여도가 적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평균가사노동 시간보다 훨씬 많은 가사노동이 요구되므로 결혼기간 중 남편의 노동에 못지 않게 많은 일을 수행하게 된다.

외국의 경우에는 가정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하여 가정생산시간과 그 가치를 평가한 연구가 있다. Kirjavainen(1989a, 1989b)은 핀란드 여성과 남성의 고용시간 및 가정생산시간을 조사하여 각각이 가정에 기여한 화폐액을 산정해 보고자 하였는데, 특히 남성과 여성 각각이 갖는 노동부담과 노동가치를

< 표 2 > 전업,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 및 임금노동시간

전업주부(단위 : 시간)		취업주부(단위 : 시간)		
김매실(1985)	10.4	한경미(1989)	6.2	
이정우(1987)	8.2	한경미(1991)	가사노동 4.0	11.7*
한경미(1987)	8.7		임금노동 7.7	
정영금(1989)	11.1	김양희(1991)	가사노동 5.6	14.3**
			임금노동 8.7	
문숙재외(1991)	11.1	(기혼남성의 경우)	가사노동 0.5	
			임금노동 9.5	

\* 1일 평균시간으로 환산하였음.

\*\* 비상용고 주부의 경우

동시에 비교함으로써 기여도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외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핀란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여성의 노동참여율도 높고 노동여건이 좋아 전체 여성이 가정생산에 소비하는 시간이 1개월당 115시간에 불과하며 비교용여성일 경우에 155시간이었다. 또한 전체 여성이 임금노동에 소비하는 시간은 1개월당 74시간으로서 전체 노동시간은 189시간이었다. 이에 비해 전체 남성의 노동시간은 임금노동시간 136시간과 가정생산시간 46시간을 합한 182시간으로서 여성의 노동시간과 미세한 차이를 보였다. 노동시간을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여성의 경우에는 4355FMK, 남성의 경우에는 5775FMK로서 격차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여성의 평균임금율(262FMK/h)과 남성의 평균임금율(363FMK/h) 간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이 결과를 통해 보면, 전체 여성의 노동시간인 189시간 중 115시간이 무임금노동시간이다. 즉, 여성이 오히려 남성보다 더 많은 노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경우에는 25%의 노동이, 여성의 경우에는 60%의 노동이 그 효용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여성은 가정에 도움을 주는 일을 적게 한다고 보여지고 이에 따라 더 많은 노동부담이 주어진다. 또 가정생산량은 국가계정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으므로 가정노동이 가정은 물론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이 무시되고 있다.

따라서 가정노동이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하나의 직업노동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 남성과 여성의 평등이란 불가능하며, 가정생산에 대한 화폐가치가 주어질 때에야 비로소 여성의 법적인 지위와 교섭력이 증가하고 가정노동에 대한 책임 역시 공유될 것이다. 특히 결혼이란 사회적 여건하에서 두 부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하려는 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각자에게 부과된 과업의 경제적 생산성과는 관계없이 노력정도와 노동시간 등이 부부의 몫을 결정하기 위한 보완적 척도로 제시될 수 있다(Goldschmidt-Clermont, 1982, 37).

이상에서 비교한 아내와 남편의 노동량을 근거로 보다면, 재산분할액 중 인적공제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도 시정되어야 할 문제

이다. 현행 상속세법은 혼인기간 중에 이룩한 배우자의 재산이 부부의 공동협력에 의해 형성된 것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배우자간의 상속과 자산양도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의 경우에 아내의 자녀 및 기타 상속자들에게 공제해 주는 일정 액수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지불해야 하며, 재산분할로 인한 증여의 경우에도 인적공제액(1억원+600만원×결혼연수)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지불해야 한다.(상속세법 29조의2,11조1)

이것은 부의 집중을 막고 제도를 약화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는 하지만,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의 이전을 자녀들의 상속과 동일하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 이혼으로 인한 배우자간의 재산이전을 일방적인 증여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게 한다. 물론 세법도 1990년 12월 31일에 개정되어 상속세 인적공제액이나 기초공제액을 대폭 상향조정하였으나, 이것은 물가변동에 따른 조치였을 뿐 재산형성이 부부의 공동노력에 의한 결과라고 보고 있지는 않다(김엘림, 1991, 62-65). 이러한 상황에서는 여성의 입장에서 재산분할을 받는 것보다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위자료를 받는 것이 세금 관례상 유리한 경우가 많아, 증여세 부과규정이 재산분할제도이용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김영갑, 1991, 62).

따라서 협의분할의 경우에과다한 재산분할액에 대하여, 또 탈세를 목적으로 이혼을 이용할 경우에 그 전액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부과할 뿐, 혼인중에 부부의 공동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없다(황우여, 1992, 27; 김영갑, 1991, 62; 이은영, 1991, 194). 이것은 재산을 분할하지 않고 남편의 명의로 하는 우리의 관습을 고려하거나 부부의 공동노력으로 재산이 형성된다는 민법상의 남녀평등원칙에 비추어 볼 때 아내의 몫이 가사노동을 통한 근로소득의 축적이라고 본다면 가능해진다.

#### IV. 요약 및 결론

현대의 가정은 남편의 취업노동과 아내의 가사노동을 통해 운영되는 공동생활이므로, 개정민법에서도 양성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재산분할청구권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주부의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법해석상의 문제에서 분할기준이 완비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여전히 가정주부의 노동가치가 과소평가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관련된 판결을 통해 평가정도를 점검하고, 재산축적에 대한 주부노동의 기여도를 입증함으로써 정당한 평가를 받기 위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으로 인한 혼인해소시에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에 대하여 자신의 재산을 분할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부부산별제의 결점을 보완하여 가정의 재산에 대한 아내의 기여를 인정받도록 하려는 제도이다. 즉 대부분의 재산이 남편의 명의로 되어있어 그 소유가 명의권자에게 귀속되므로, 아내는 경제적 약자의 입장에 놓이게 되고 이혼시에 생활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이혼시에는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중에 취득한 재산을 부부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함으로써 주부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이제까지 약 1년간 재산분할에 관한 판례가 나와서 부부의 기여도에 관한 유형이 구분되었는데, 맞벌이 주부나 가업을 공동으로 운영한 주부의 경우에는 아내의 수입, 협력정도, 가사노동 공헌도 등을 참작하여 50%인정되었다. 이에 비해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친정의 도움이나 결혼지참금 등을 참작하여 50%인정된 예도 있으나 대체로 30-40%인정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여도 판정은 가사노동을 직업노동보다 경시하는 것이며 남편의 노동에 비해 과중한 취업주부노동량을 간과한 결과이다. 또한 판결을 통해 볼 때, 아내의 유책행위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여성의 능력으로 축적할 수 있는 재산의 한계를 낮게 책정함으로써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주부의 기여도를 적게 인정하였다.

그러나 아내가 담당하는 가사노동은 가족의 욕구 충족에 알맞은 새로운 상품을 재생산하며 직업노동

을 통한 소득획득을 가능케 하는 생산적 활동이다. 또한 주부는 가사노동을 수행함으로써 가정소득의 지출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상실비용을 절약하게 되며, 취업노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임금을 포기하고 가사노동을 택한 것이므로 상실임금의 축적이 가능했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 노동시간의 측면에서 부부를 비교한다면, 취업주부는 기혼남성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전업주부는 기혼남성과 비슷한 시간을 노동에 소비한다는 결과들을 통해 볼 때 아내는 남편 못지 않게 많은 일을 수행함을 증명할 수 있다. 따라서 재산형성에 대한 아내의 기여분을 남편보다 적게 인식하는 시각이 시정되어 보다 합당한 판단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볼 때, 사회에서의 마찬가지로 가정에도 남녀평등의 원칙이나 민주적인 사고를 적용시키고자 한다면, 또 사회의 전반적인 시각을 교정하여 주부들이 가사노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고자 한다면, 재산분할의 문제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결혼 후 가사노동에만 전념해 온 아내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50%인정해주어야 한다.

둘째, 가사노동과 취업노동을 이증으로 수행해 온 취업주부의 경우에는 취업소득으로 형성한 재산과 가사노동으로 기여한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50%이상 인정해야 한다.

셋째, 농업과 자영업가정의 주부와 같이 수입노동과 가사노동을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기타사정'으로 간주하여 두가지 노동참여를 모두 고려해 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재산분할은 위자료와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자기재산의 반환이므로 여성의 유책성을 강조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남편의 보편적인 직업노동을 통해 축적된 재산은 액수에 관계없이 아내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단지 아내의 능력으로 축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재산을 남편의 능력에 의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지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부의 축재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여섯째, 재산분할은 주부의 기여에 대한 지분이전이기 때문에 불로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의 댓가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증여세가 부과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현행세법상으로는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을 증여라고 보며 이러한 세법은 쉽게 개정되지 않으므로, 공제액을 고정시키기보다는 임금상승률과 같은 비율로 인상하는 등의 보조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일곱째, 가족법은 사회보장법의 기초가 되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기본원리가 사회보장법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아내의 경제적,법적 지위를 좀 더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나, 이러한 경제적 지위향상과 남녀평등이 정신적인 남녀평등이나 주부의 지위인정보다 중요한 것은 아니다. 단지 구체적인 제도의 완비와 경제적인 독립이 없이는 보다 근본적인 평등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재산의 부부공동소유는 가정내 부부간의 평등을 가져오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김삼화(1991), "나의 재산기여도는 얼마나 되는가", 생활법률 7, 20-23.
- 2) 김애실(1985),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여성연구 3(4), 25-47.
- 3) 김양희(1991), "여성의 의식과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9(2), 11-149.
- 4) 김엘림(1991), "개정가족법과 가족법 개정운동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9(4), 43-80.
- 5) 김영갑(1991), "재산분할청구권", 인권과 정의 7, 52-63.
- 6) 김외숙, 이기영, 최근숙(1992), 가족자원관리,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
- 7) 김주수(1991),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권", 판례월보 10, 17-23.
- 8) 문숙재(1981), "가정관리행동을 위한 인류학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19(4), 42-48.
- 9) 문숙재, 정영금(1991), "주부의 사고발생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4),
- 10) 시사저널, 부부재산 절반은 아내의 몫, 1991.5.30.
- 11) 이은영(1991), "법과 여성현실", 여성학 강의, 서울:동녘. 182-205.
- 12) 이정우, 최보가, 최명숙(1987), "한국 주부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추정", 대한가정학회지 23(4), 99-111.
- 13) 이해진(1991),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소고", 변호사 21, 211-227.
- 14) 정영금(1989), "가정노동의 가치평가를 위한 방법론적 모색",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5) 이화숙(1990), "개정가족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의 신설의 의의와 과제", 여성연구 8(1), 149-180.
- 16) 조선일보, 1992.6.24.
- 17) 한경미(1987), "비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8) ——(1989),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2), 1-4.
- 19) ——(1991), "취업주부의 시간사용과 영향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71-190.
- 20) 한국민사법학회(편)(1982), 민사법 개정의견서.
- 21) 황우여(1992), "개정민법상의 이혼", 인권과 정의 2, 11-41.
- 22) Chadeau, Ann(1985), "Measuring household activities : some international comparison", Review of Income and Wealth, 31(3), 237-253.
- 23) Kirjavainen, Leena M(1989a), Economic Evaluation of Household Production Time of Men and Women in Finland and the United States.
- 24) ——(1989b), Time-Use and Its Value in Household Production in Finland and The United States.
- 25) Goldschmidt-Clermont, L(1982), "Unpaid Work in the Household: A Review of the Economic Evaluation Methods", Women, Work and Development Series, No.1, Geneva, Switzerland: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